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자 : 대한의사협회(1068202511)
(경유)

제 목 : 「고가의약품의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 안내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의 일반원칙 ‘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’에 따라 「고가의약품의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제정(’23.1.3. 시행) 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「고가의약품의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
www.hira.or.kr → 기관소식 → 내부규정 → 심사평가원내부규정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

수신자

결재	담당 정유경	팀장 하현지	부장 김국희	실장	전결01/06 유미영
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협조

시행 신약성과관리부-8 (2023.01.06.) 접수 ()
 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
 전화 033-739-1366 전송 033-811-7624 /hotb9697@hira.or.kr / 공개